

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
검 토 보 고

I. 주요내용

- 재이용·공급하고 남은 하수처리수를 관할 지역 외의 하·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에 공급할 것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공공하수도관리청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(안 제10조제4항).
-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하·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, 관련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0조의2 등).
- 하·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 및 온배수 재이용사업자에 대한 인가를 시설 공사 시작일 또는 공사 완공 예정일부터 1년이 지나도 공사 또는 완공하지 아니한 것을 이유로 취소하는 경우 “정당한 사유”인지를 고려하도록 함(안 제17조).

II. 검토의견

안 제10조의2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하·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직접 설치·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, 필요한 경우 설치·운영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(하·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대행기관)이 대행할 수 있도록 함.¹⁾

1) 「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의2(국가의 하·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 및 운영)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역별 물 수요량 및 공급 가능량, 가뭄 발생 전망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하·폐

하·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자로 “하·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대행기관”이 추가됨에 따라, 현행법상 하·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의 의무를 규정한 각 조문도 함께 개정할 필요가 있음.²⁾

그런데, 개정안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관계 공무원이 출입·검사하도록 할 수 있는 사업자에 “하·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대행기관”을 추가하지 않고 있는바,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았음.

[수정의견]

개 정 안	수정의견
제24조(보고 및 검사)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빗물이용시설·중수도의 소유자 및 관리자, <u>공공하수도관리청</u> 및 하·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, 온배수 재이용사업자, 하·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등 설계·시공업자에게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게 할 수 있으며,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시설 등에 출입하여 관련 서류·시설·장비 등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.	제24조(보고 및 검사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 <u>공공하수도관리청, 하·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대행기관</u> 및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~ 5. (생략) ② (생략)	1. ~ 5. (현행과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

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② ~ ④ (생략)

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하·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.

2) 안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, 안 제21조 등

그 밖에 개정안의 체계·자구를 검토한 결과, 안 제14조 및 제15조에
서 하·폐수처리수 “재이용사업 대행기관”을 “이용사업 대행기관”으로
인용한 부분을 수정하는 등 법문의 명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일부
경미한 자구 수정을 하였음(주서본 참조).

(전문위원 이 세 진)